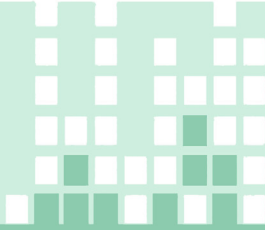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170000-000543-14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



일러두기

1. 이 책자는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조례 속 숨은 규제를 개선한 사례 100선을 알기 쉽게 소개하여, 이와 같은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조례가 정비되도록 유도하고, 유사한 규제가 조례에 신설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책자입니다.
2. 이 책의 사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조례 정비과제 중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법령 소관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3. 사례는 주제별로 정리하였고, 문제 유형은 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② 상위법령 위반, ③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세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4. 이 책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에 해당하는 조례를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속하게 해당 조례를 정비하여 정부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지역 구석 구석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편 공유재산 관련 조례	1
1. 공유재산의 과납 사용료 등에 대한 반환가산금 이자 규정 마련	3
2. 공설시장 사용료 미반환 관행 개선	5
3. 공설시장 사용 관련 보증금 납입 사유 개선	7
4. 지자체장에 의한 자의적인 손해배상금 결정 방지	9
5.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 1	11
6.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 2	13
7. 행정재산 관리위탁 갱신 규정 정비	15
8.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의 경제활동 제한 철폐	17
9. 국가유공자 등에게 매점 등 우선 사용 허용	19
10. 공설시장 사용·수익허가 승계 절차 간소화	21
11. 법령에 근거 없는 변상금 징수사유 정비	23
12. 공유재산 사용의 적법성 제고	25
제2편 지방재정(기금·특별회계), 지방세 관련 조례	27
13.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적법성 확보	29
14.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을 통한 기금운용의 전문성 강화	30
15.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 연장	32
16.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 부담 완화	34
17. 법령상 근거 없는 보험가입 의무 완화	36
18.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사유 명확화	38
19. 특별회계 운영의 투명성 제고	40
20. 잉여금 지출 용도 적법성 제고	42
21. 재해구호기금의 사용 용도 확대	44
22.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사용 용도 확대	47
제3편 재단법인, 지방공기업 관련 조례	49
23. 지방공사의 사채발행 한도 축소	51

24. 지방공사 운영의 자율성 및 적법성 제고	53
25. 재단법인 잔여재산 귀속 규정 정비	55
26. 지방공사 운영의 자율성 제고	56
제4편 가산금 관련 조례	57
27.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완화	59
28.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완화	61
29. 법령 근거 없는 체납체분 규정 삭제	63
제5편 과태료 관련 조례	67
30. 법령 위임 없이 규정된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69
31.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등 과태료 관련 절차 규정 정비	72
32. 도로 무단 점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75
33. 과태료 중과 규정 삭제	77
제6편 도시계획, 건축 관련 조례	81
34. 개발행위허가 취소기준 완화	83
35. 주민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시 서류제출 부담 완화	86
36. 준주거지역 등의 건축제한 방식 네거티브로 전환	88
37. 공동구 관리·운영 위탁 대상 확대	91
38. 공개공지의 기준 완화	93
39.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개선	95
제7편 도로, 교통 및 주차장 관련 조례	97
40.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완화	99
41. 도로점용료 감면사유 확대	102
42. 도로점용허가 갱신 시 서류 제출 부담 완화	104
43. 도시공원 등 점용료 미환불 관행 개선	107
44. 도로점용료 납부 편의 도모	109
45. 도로점용 공사 시 교통소통대책 수립 강화	111
46.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 허용	113
47. 민영 노외주차장 요금제한 규정 폐지	115
48. 주차요금 미납자 등에 대한 차량운행 제한 폐지	117

49.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규정 삭제	119
50.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체계 마련	121
51.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등	124
52. 저공해자동차 운행 촉진 조례 제정	128
53. 자전거 도로 설치 의무 완화	131
54. 보행자 안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 도모	133
55. 운수종사자에 대한 과도한 교육이수 부담 완화	135

제8편 유통(시장·대규모점포 등) 관련 조례 137

56.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등 정비	139
57.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요건 완화	141
58.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시 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 완화	143
59. 임시시장 개설요건 완화	146
60.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사유 마련	148
61. 유통분쟁 조정을 위한 위원회 신설	150
62.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확대 1	152
63.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확대 2	154
64. 유통분쟁 조정 신청 요건 완화	156

제9편 산업단지 관련 조례 159

65. 산업단지개발사업 분양수의 산정을 위한 이윤율 규정	161
66. 산업단지개발사업 비용부담 주체 적정화	163
67.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 주체 확대	165

제10편 환경(폐기물·가축분뇨 등) 관련 조례 167

68.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완화	169
69.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 등 실시	172
70.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위탁계약 시 규제 완화	175
71.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해제 절차 및 방법 명확화	179
72. 법령상 근거 없는 신고의무 폐지	181
73. 민감정보 공개 제한	183

제11편 문화예술 관련 조례 185

74. 미술장식 설치 의무 완화	187
75.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예술활동 보장	190

76.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 불편 해소	193
77. 문화재 수리 및 매장문화재 보호에 관한 내용 분리 규정	196
78. 문화재 기초조사 사전 동의 예외 사유 삭제	198

제12편 기타 조례 201

79. 옥외광고업 등록기준 완화	203
80. 산지유통인의 경제활동 보장	205
81. 농업기반시설 등에 대한 목적 외 사용기간의 용도별 구분	207
82. 동물보호센터 지정 요건 개선	209
83.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인 등에 대한 피해 보상 강화	211
84. 시민인권보호관 임용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정비	213
85. 「민법」 개정에 따른 결격사유 요건 정비	215
86. 공공기관 정보 활용도 제고	217
87. 주민 제안서 폐기 시 통보	219
88.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시민단체의 참여 보장	221
89.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윤리 강화	223
90. 분쟁당사자 대표 선정의 자율성 보장	225
91. 명예도민에게 의무 부과 규정 삭제	227
92. 자의적인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선임 방지	229
93. 공립어린이집 재수탁 기회 부여	231
94. 민간 지역아동센터의 정보제출 부담 완화	236
95. 법령상 근거 없는 보험가입 의무 완화	239
96. 금융기관의 융자금 이자비용 부담 완화	240
97. 정신보건자문의 자격요건 확대	241
98.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 도모	243
99. 제대혈 기증 산모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245
100. 등록한옥 소유권 이전에 대한 규제 개선	247

부 록 249

1.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소개	251
2.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소개	252
3.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서	253
4.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256

제1편

공유재산 관련 조례

1. 공유재산의 과오납 사용료 등에 대한 반환가산금 이자 규정 마련
2. 공설시장 사용료 미반환 관행 개선
3. 공설시장 사용 관련 보증금 납입 사유 개선
4. 지지체장에 의한 자의적인 손해배상금 결정 방지
5.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 1
6.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 2
7. 행정재산 관리위탁 갱신 규정 정비
8.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의 경제활동 제한 철폐
9. 국가유공자 등에게 매점 등 우선 사용 허용
10. 공설시장 사용·수익허가 승계 절차 간소화
11. 법령에 근거 없는 변상금 징수사유 정비
12. 공유재산 사용의 적법성 제고

1

공유재산의 과오납 사용료 등에 대한 반환가산금
이자 규정 마련

조례내용

「공유재산 조례」

공유재산의 과오납 사용료 등에 대한 반환가산 이자에 관한 규정이 없음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가 개정(2013.6.21. 공포, 2013.12.22. 시행)되어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하는데, 「공유재산 조례」에서는 과오납금에 대한 반환가산 이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주민에게 과오납금에 대한 반환가산금 지급 곤란

II. 개선방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용료 등 과오납금에 대한 반환가산 이자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조례」를 개정하여 반환가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지방자치단체가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로·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를 말한다.

2

공설시장 사용료 미반환 관행 개선

조례내용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10조(허가취소에 의한 사용료 반환)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I.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원칙적으로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 부과

II. 개선방안

- 이미 납입한 공설시장에 대한 사용료라 하더라도 공설시장 사용수익허가 취소 시 남은 사용료는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시장 상인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2.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이식(移植)에 필요한 경비
3.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이식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3

공설시장 사용 관련 보증금 납입 사유 개선

조례내용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0조(보증금) ①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장육 또는 노점의 사용자에게 보증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기준은 시장(市長)이 정한다.

I.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의 경우 보증금 납입과 관련된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서는 행정재산 사용·수익에 대한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을 뿐인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에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장육 또는 노점의 사용자에게 보증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장 상인에게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 부과

II. 개선방안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장육 또는 노점의 사용자에게 보증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익계약(隨意契約)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4

지자체장에 의한 자의적인 손해배상금 결정 방지

조례내용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 제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점포 또는 기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괴한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금은 시장(市長)이 따로 정한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3조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제393조를 준용하여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에서는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점포 또는 기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괴한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되 이 경우 배상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민법」에 대한 특례를 조례로 규정

II. 개선방안

- 공설시장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5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 1

조례내용

「공공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0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나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천재지변과 악천후 등으로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국가·도나 시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제1항 제3호, 제4호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I.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공공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취소·정지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체육시설의 사용허가의 취소·정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시장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특례를 조례로 규정

II. 개선방안

- 공공체육시설의 사용허가의 취소·정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공체육시설 설치·운

영 조례」를 개정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 구현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 2

조례내용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손해배상)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이용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활동시설 및 부대시설물이 파손이나 붕괴되었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그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는 모든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I.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는 모든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자인 지방자치단체도 해당 시설의 관리 책임이 있는데 청소년수련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모든 민사상 책임을 시설 이용자가 지도록 하는 것은 「민법」 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특례를 조례로 규정

II. 개선방안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해당 시설 이용자가 모든 민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

례」를 개정하여 「민법」에 따라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 구현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

행정재산 관리위탁 갱신 규정 정비

조례내용

「읍·면·동복지회관 운영 조례」

- 제0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사용료는 별표 0과 같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관을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사용료납입, 복지회관시설의 관리, 수탁자 책임계약 담보 및 기타 위탁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원칙적으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되,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읍·면·동복지회관 운영 조례」에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재산인 읍·면·동복지회관의 관리위탁기간을 아무런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

II. 개선방안

- 읍·면·동복지회관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원칙적으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되,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을 자의 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읍·면·동복지회관 운영 조례」

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산 관리의 적법성 및 효율성 제고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8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의 경제활동 제한 철폐

조례내용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

제0조(설치허가의 취소 등) ①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자는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운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해태하는 경우
- 2.설치허가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
- 3.부당한 방법으로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 4.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자는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등의 경우에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허가가 취소된 자는 다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에서는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자는 공공시설내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운영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해태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설치허가가 취소된 자는 다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주민(장애인, 노인 등)의 경제활동을 제한함

II. 개선방안

- 공공시설 내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취소 시 다시는 허가를 받을 수 없

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9

국가유공자 등에게 매점 등 우선 사용 허용

조례내용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제0조(신청자격 및 구비조건) ①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또는 위탁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에게도 매점 등의 우선 사용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는 우선 사용(허가)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

II. 개선방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등에 따른 매점 등 우선 사용권자를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여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

관련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단체의 범위, 매점의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생업지원) 법 제26조의3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안의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장애인
2. 부자(父子)가정 또는 모자(母子)가정
3.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10

공설시장 사용·수익허가 승계 절차 간소화

조례내용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0조(변동신고) 사용자는 주소의 변경 또는 상속에 의하여 시장사용권을 승계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市長)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I.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에서는 공설시장 사용자는 주소의 변경 또는 상속에 의하여 시장사용권을 승계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설시장 사용자에게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별도의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주민에게 불편 초래

II. 개선방안

- 공설시장 사용자가 시장사용권을 승계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익계약(隨意契約)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11

법령에 근거 없는 변상금 징수사유 정비

조례내용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 및 관리 조례」

제0조(사용건설기계의 망실 또는 훼손) ① 임차인의 과실로 사용 중인 건설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건설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한 임차인은 사업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③ 사업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으로부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건설기계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때
 3. 임차인으로 하여금 원상을 회복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하거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하거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하거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를 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는 도로보수건설기계의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등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변상금 징수 사유로 규정하여 도로보수건설기계의 임차인에게 경제적 부담 가중

II. 개선방안

- 도로보수건설기계의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등 「공유재

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변상금 징수사유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하거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하거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하거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12

공유재산 사용의 적법성 제고

조례내용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0조(지원) 시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2항 및 제32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공유 재산을 무상 대여 할 수 있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체결 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공유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시장은 상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인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도 공유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체결의 한계를 벗어남

II. 개선방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체결 사유 외의 사유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의 적법성 제고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제2편

지방재정(기금·특별회계), 지방세 관련 조례

13.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적법성 확보
14.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을 통한 기금운용의 전문성 강화
15.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 연장
16.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 부담 완화
17. 법령상 근거 없는 보험가입 의무 완화
18.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사유 명확화
19. 특별회계 운영의 투명성 제고
20. 잉여금 지출 용도 적법성 제고
21. 재해구호기금의 사용 용도 확대
22.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사용 용도 확대

13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적법성 확보

조례내용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음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에서는 재정운용기금에 대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II.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정운용기금에 대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는 내용으로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적법성 확보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14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을 통한 기금운용의 전문성 강화

조례내용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0조(기금운용위원회)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으로, 위원은 구 공무원 3명, 구의회 의원 2명, 소비자단체 임원 1명으로 위촉한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농수축산물직판장 운영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으로, 위원은 구 공무원 3명, 구의회 의원 2명, 소비자단체 임원 1명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여 동 기금 운용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에 미달

II.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맞게 농수축산물직판장 운영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높이는 내용으로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적법성 강화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 연장

조례내용

「구(시, 군)세 기본 조례」

- 제0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으로서 그 매각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공보에 게재하거나 시·구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지방세기본법」 제94조에서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는 경우 등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에서는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85조제3항에서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시, 군)세 기본 조례」에서는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10일간 공고하도록 하여 상위법령에 따른 공고기간 보다 짧게 규정하여 주민이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여 주민 불편 초래

II. 개선방안

- 「국세징수법」 제85조제3항에 맞추어 체납처분 중지 공고는 1개월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시, 군)세 기본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94조(체납처분의 중지)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제9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8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 국세징수법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57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6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 부담 완화

조례내용

구(시, 군)세 기본 조례

제0조(납세담보의 요구)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82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2. 일정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등을 하는 경우
3.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으로 구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I.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기 시 납세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구(시, 군)세 기본 조례」에서는 담보제공 예외 사유에 이를 포함하지 않아 사업이 위기에 처한 영세 사업자 등의 금전부담 증가

II. 개선방안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조례상의 담보제공 예외 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구(시, 군)세 기본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망·질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담보 제공을 요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 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제61조 및 제112조의2에서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 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5.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기한연장 시 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그 담보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법 제4장제5절을 준용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5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말한다.

17

법령상 근거 없는 보험가입 의무 완화

조례내용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0조(보험가입) 국민주택의 입주자는 군수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I.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하여금 군수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주민의 금전부담 증가

II. 개선방안

- 법령의 위임 없이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하여금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주택법

제73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 부담금
 2.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4. 농협은행로부터의 차입금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18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사유 명확화

조례내용

「보조금 관리 조례」

제0조(사정변경에 의한 결정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 그 후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금의 교부결정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은 예외로 한다.

I.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지방재정법」 제17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②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및 ③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는 구청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 후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불명확한 사유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가능

(참고로, 2015.1.1. 시행되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례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 규정 가능)

II. 개선방안

- 「지방재정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 외의 사유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보조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 도모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의2(보조사업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조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지방재정법 (법률 제12687호, 2014.5.28. 공포, 2015.1.1. 시행)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19

특별회계 운영의 투명성 제고

조례내용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0조(이월사용)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지방재정법」 제50조에서는 세출예산의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명시이월비),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의 경우(사고이월비) 및 계속비의 경우에만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세출예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이월 사용하도록 규정

II. 개선방안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맞게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을 세출예산의 이월의 사유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재정 관리의 적법성 및 투명성 제고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0

잉여금 지출 용도 적법성 제고

조례내용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0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전1,2호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전1,2,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8/10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지방공기업법」 제37조에서는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 전(前)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補填)하여야 하고,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하고 남은 금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減債)적립금 또는 건설개발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도사업 설치 조례」에서는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①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②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③ 전1,2호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및 ④ 잉여금에서 전1,2,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8/10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의 순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여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익금 처분 용도 외에 배당납부금 등에 처분 가능하도록 규정

II. 개선방안

- 잉여금 지출 용도를 「지방공기업법」 제37조제1항에 맞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도사업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재정 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 제고

관련 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37조(이익의 처리) ①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 전(前)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補填)하여야 하고,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하고 남은 금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減債)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21

재해구호기금의 사용 용도 확대

조례내용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제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이재민 구호비 지원기준에 의한 지방비 부담금
2. 이재민 구호를 위한 모포, 의류, 취사도구, 세면도구, 주·부식류 등 생활필수품 구입
3.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및 구호비(중앙 지원대상인 경우는 선지원 후정산)
4. 비축물자 및 보관창고 설치
5. 기금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6. 의연금품 조작경비

② 구호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로서 구호를 위한 토지·건물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에서는 재해구호기금의 용도에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재해구호기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분야에 원활하게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 발생

II. 개선방안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를 빠짐 없이 조례에 규정하거나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재해구호법

제4조(구호의 종류 등) ①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2. 급식이나 식품·의류·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3. 의료서비스의 제공
4.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5. 위생지도
6. 장사(葬事)의 지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구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구호의 한도·방법 및 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재해구호물자의 확보 및 보관 등) ① 구호기관은 지역별 재해발생 현황 및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재해구호물자를 항상 확보하여 응급 구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구호활동을 할 때 재해구호물자가 부족하면 시·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지원요청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및 국민안전처장관은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구호지원기관이 재해구호물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창고를 설치·운영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확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조(응급구호 및 재해구호 상황의 보고) 구호기관은 재해로 인하여 이재민이 발생하면 전체 재해발생 상황을 파악하기 전이거나 재해가 진행 중일 때라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응급구호를 하고, 그 재해의 상황과 재해구호 내용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토지 또는 건물 등의 사용) ① 구호기관은 구호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구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용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물자의 우선사용 등) ① 구호기관은 구호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방역·급식 또는 물자의 취급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시설 또는 물자의 우선사용과 판매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재해구호업무에 협력하는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구호비용의 부담) ① 제4조에 따른 구호에 필요한 비용은 구호기관이 부담한다.

② 정부는 구호기관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 등으로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① 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

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재해구호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2. 법 제7조에 따른 응급구호
 3.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
 4.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 집행
 5. 재해구호물자의 조달·운송
 6.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
 7.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 ② 시·도지사가 제1항제4호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전 집행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금액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및 별표 3의 비고 제1호의 재난지원금 부담률에 따라 보전(補填)한다.
- ③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내역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사용 용도 확대

조례내용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0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4호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5호에 따른 도로시설개선과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관한 사업으로서 시장 등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5.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자에 대한 관리 운영비의 일부 보조
7. 차입금의 상환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에서는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에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는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교통수단 서비스개선 분야 등에 특별회계 사용 제한

II. 개선방안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용도를 빠짐 없이 규정하거나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용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에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2.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4. 그 밖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③ 특별회계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입금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은 제33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실시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4. 제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5.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④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 3 편

재단법인, 지방공기업 관련 조례

- 23. 지방공사의 사채발행 한도 축소
- 24. 지방공사 운영의 자율성 및 적법성 제고
- 25. 재단법인 잔여재산 귀속 규정 정비
- 26. 지방공사 운영의 자율성 제고

23

지방공사의 사채발행 한도 축소

조례내용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사채발행 및 차관) ①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 한도액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 각 호 중 주택 및 토지 개발 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순자산액의 10배 이내, 그 이외의 사업은 4배 이내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 및 외국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지방공사의 사채발행 한도를 순자산액의 4배 이내(주택사업 등을 경영하는 공사 외의 공사는 2배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이 개정되었으나,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지방공사의 사채발행 한도를 이 보다 높게 규정하고 있어, 지방공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으려는 법령 개정 취지가 미반영

II. 개선방안

- 지방공사의 사채발행 한도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맞게 낮추는 내용으로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68조(사채 발행 및 차관) ①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 발행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삭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공사의 부채비율,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⑦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 또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사채발행) ① 공사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사채의 권면액을 수종으로 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권종별 발행총액)
4. 이율
5.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 모집 및 인수방법

② 공사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4배 이내

2. 제1호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2배 이내

③ 공사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목적으로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법 제6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채발행 승인 신청 당시 사채발행예정액을 합산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2.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사채발행예정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⑤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번호
2. 법인의 명칭
3.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24

지방공사 운영의 자율성 및 적법성 제고

조례내용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되, 공사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 ③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 ⑤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⑦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⑧ 이사회 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지방공기업법」 제62조에서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공사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는 지방공사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지방공기업법」 제62조에 위배

II. 개선방안

- 「지방공기업법」 제62조에 맞게 지방공사의 이사회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공사 운영의 자율성 및 적법성 제고

관련 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62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5

재단법인 잔여재산 귀속 규정 정비

조례내용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0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구에 귀속된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민법」 제80조제1항에서는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구에 귀속된다는 내용을 정관이 아닌 조례에서 규정

II. 개선방안

- 「지방공기업법」 제13조제1항에 맞게 해산한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재단법인 운영의 자율성 및 적법성 제고

관련 법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26

지방공사 운영의 자율성 제고

조례내용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0조 (재산의 무상사용)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I.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사의 재산권 행사 제약

II. 개선방안

-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공사의 재산을 시장이 법령상 근거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시장의 공사 재산 무상 사용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공사 운영의 자율성 및 적법성 제고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 4 편

가산금 관련 조례

- 27.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완화
- 28.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완화
- 29. 법령 근거 없는 체납체분 규정 삭제

27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완화

조례내용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제0조(부담금의 연체에 대한 가산금)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한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5항이 개정(2013.8.6. 공포, 2014.2.7. 시행)되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은 경우 부가하는 가산금의 비율이 부담금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되었으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조례」에서는 종전대로 가산비율을 100분의 5로 규정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부여하고 가산금 부과에 있어 혼란 초래

II. 개선방안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등) ① 부담금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의3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은 부과일부터 1년 이내에 내야 하되, 납부기한 내에 사업의 사용승인등을 받을 경우에는 그 신청일(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 이전까지 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의 사용승인등을 받는 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까지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착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연기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의 착공 시까지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로 한다.

⑤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28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완화

조례내용

「지하수 조례」

제0조(가산금) 시장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지하수법」 제30조의3제4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하고,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9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59조에서는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하수 조례」에서는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 부여

II. 개선방안

-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하수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지하수법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7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59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29

법령 근거 없는 체납처분 규정 삭제

조례내용

「상징물 관리 조례」

제0조(위반 시 조치사항)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시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예를 따른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상 체납처분을 하려면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되나, 「상징물 관리 조례」에서는 법령의 근거 없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법」의 예(체납처분을 의미)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주민에게 부담으로 작용

II. 개선방안

- 법령의 근거 없이 체납처분을 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상징물 관리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

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73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에게 부과를 하는 경우로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납세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할 때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할 때에는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92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총당, 공매의 중지, 부과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全額)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총당되었을 때

3. 부과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5.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할 때

제93조(압류의 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세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해제의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보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관자에게 그 재산을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인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

류재산을 수령할 것을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압류조서에 영수 사실을 기입(記入)하여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제94조(체납처분의 중지)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총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제9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총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5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때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승인·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체납처분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84조를 준용한다.

제9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총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7조(사해행위의 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지방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98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5편

과태료 관련 조례

- 30. 법령 위임 없이 규정된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 31.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등 과태료 관련 절차 규정 정비
- 32. 도로 무단 점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 33. 과태료 중과 규정 삭제

조례내용

「도시공원 조례」

제0조(과태료 부과·징수) 시장이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별표 0과 같다.

[별표 0]

과태료 부과 기준(제0조 관련)

관련 법령	해 당 조 항	과 태 료 금액
법 제49조 제1항	1.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10만원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7만원
	3.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7만원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에서는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별표 4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반 정도·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공원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주민 혼란 및 불편 초래

II. 개선방안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없이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도시공원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제56조(과태료) ①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입장료를 징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2.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공원시설에서 행하는 영업행위(「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제외한다.
5.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금액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입장료를 징수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	800만원
2.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10만원
3.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5만원

31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등 과태료 관련
절차 규정 정비

조례내용

「지하수 조례」

제0조(이의제기) 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및 제20조제1항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하수 조례」에서는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기간보다 짧게 규정하여 주민에게 혼란 및 불편 초래

II. 개선방안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정 전체를 삭제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맞게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는 내용으로 「지하수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에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②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고자 하는 행정청 소속 직원은 당사자에게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 대상 및 검사 이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 달성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검사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행정청의 과태료 결산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한다.

32

도로 무단 점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조례내용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0조(과태료) 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수리·용접 등을 하는 행위
4.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서는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제1호) 및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제2호)에 대해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서는 도로 무단 점유와 관련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등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주민 혼란 및 불편 초래

II. 개선방안

- 도로 무단 점유와 관련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등 「도로법」 제117조제2항 각 호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태료 부과 사유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제1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조례내용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 제0조(측정 및 과태료 등)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4조제1항의 별표에서 정한 유지기준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 그 기준을 초과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에서 정한 유지기준을 초과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 최근 3년 이내에 유지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중과할 수 있다.

I.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상 근거 없이, 최근 3년 이내에 공기질 유지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과태료 중과

II. 개선방안

- 법률의 위임 없이 과태료 부과를 중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6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한 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4.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5.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5조를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제1항 제1호			
1) 유지기준을 50% 미만 초과한 경우		50	60	80
2) 유지기준을 50% 이상 100% 미만 초과한 경우		80	100	130
3) 유지기준을 100% 이상 200% 미만 초과한 경우		130	160	200
4) 유지기준을 200% 이상 초과한 경우		200	250	300
나.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제2항 제1호	50	70	100
다. 법 제9조를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한 경우	법 제16조제2항 제2호			
1)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않은 경우		300	300	300
2) 거짓으로 제출·공고한 경우		500	500	500
라.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제2호	500	700	1000
마.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경우	법 제16조제2항 제3호			
1)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200	300	400
2)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100	150	200
3)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경우		250	370	500
바.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법 제16조제2항 제4호	100	150	2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6조제2항 제5호	250	370	500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6편

도시계획, 건축 관련 조례

- 34. 개발행위허가 취소기준 완화
- 35. 주민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시 서류제출 부담 완화
- 36. 준주거지역 등의 건축제한 방식 네거티브로 전환
- 37. 공동구 관리·운영 위탁 대상 확대
- 38. 공개공지의 기준 완화
- 39.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개선

조례내용

「도시계획 조례」

제0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I.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 각 호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 및 개발행위를 끝낸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등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유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개발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

II. 개선방안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상 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개발행위허가 취소사유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 또는 공사를 한 자
2. 도시·군계획시설을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한 자
3.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
4. 제5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5.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 5의2.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
6.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개발행위를 끝낸 후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7의2. 제6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76조(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한 자
9.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위반하여 건축한 자
10.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을 위반하여 건축한 자
11. 제79조에 따른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위반한 자
12.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
13. 제84조에 따른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 기준을 위반한 자
14.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 자
15.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 15의2. 제88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 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15의3.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내용에 맞지 아니하게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16. 제89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7.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끝낸 후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8.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체결한 자
19.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20. 제30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사용한 자
21.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인가·지정 등을 받은 자
 - 가.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
 - 나.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준공검사
 - 다.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라.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 마.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 바. 제9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 사.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2. 사정이 변경되어 개발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35

주민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시 서류제출
부담 완화

조례내용

「도시계획 조례」

제0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제안서, 도시관리계획 도서 및 계획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동의서(대상 토지 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80% 이상)

I.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서는 주민이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그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도서 및 계획서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동의서(대상 토지 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를 첨부하도록 규정하여 주민에게 서류 제출 부담 가중

II. 개선방안

-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동의서(대상 토지 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를 제출서류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36

준주거지역 등의 건축제한 방식 네거티브로 전환

조례내용

「도시계획 조례」

제0조(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별표]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0조제1항제6호 관련)

1. 영 별표 7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및 동물원 제외)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만, 소매시장과 상점은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라. 〈삭제〉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별표 4 제2호자목 (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 내지 아목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및 별표 7 등이 개정 (2014.1.14. 공포, 2014.7.14. 시행)되어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등 주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이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인 네거티브 방식(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으로 전환되었으나,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여전히 종전의 원칙적 금지 방식(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으로 규정하고 있어, 산업의 변화 등에 신속히 대응하려는 법령 개정 취지 미반영

II. 개선방안

-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여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 조례」 해당 조항 및 별표 등 개정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별표 7]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도축장·도계장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37

공동구 관리·운영 위탁 대상 확대

조례내용

「도시계획 조례」

제0조(공동구의 관리위탁) 시장은 법 제1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동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 시장이 공동구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구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 기관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공동구의 관리·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공동구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상위법령에 따른 공동구 관리·운영 수탁기관의 범위보다 좁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시장이 공동구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만을 규정하여 일부 기관의 수탁을 제한하는 규제로 작용

II.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구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의 범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대상 기관이 모

두 포함되도록 「도시계획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① 공동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다만,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3. 공동구의 관리·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관

조례내용

「건축 조례」

제0조(공개공지등의 확보) ②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개공지등은 일반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길이 및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공개공지등을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공개공지등에는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조각물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
5.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개공지등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관할 구청장은 유지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할 것
6.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I.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서는 공개공지는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공개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긴 의자 등)을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 「건축 조례」에서는 공개공지 1개소의 면적, 필로티 구조의 유효높이 등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사항까지 규정하여 건축주 등에게 불필요한 부담 부과

II. 개선방안

- 「건축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공개공지의 설치 기준 등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건축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지: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원형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 삭제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조례 내용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0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52조의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하 이 장에서 “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00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0조(심의·조정 대상)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정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단지 내 공사 및 용역발주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시·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제52조제2항이 개정(2013.12.24. 공포, 2014.6.25. 시행)되었으나,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있지 않아 층간소음 관련 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할 수단이 없어 주민 불편 발생

II. 개선방안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

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주택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⑧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2항에 따른 행위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①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 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 ③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7편

도로, 교통 및 주차장 관련 조례

40.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완화
41. 도로점용료 감면사유 확대
42. 도로점용허가 갱신 시 서류 제출 부담 완화
43. 도시공원 등 점용료 미환불 관행 개선
44. 도로점용료 납부 편의 도모
45. 도로점용 공사 시 교통소통대책 수립 강화
46.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 허용
47. 민영 노외주차장 요금제한 규정 폐지
48. 주차요금 미납자 등에 대한 차량운행 제한 폐지
49.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규정 삭제
50.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체계 마련
51.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등
52. 저공해자동차 운행 촉진 조례 제정
53. 자전거 도로 설치 의무 완화
54. 보행자 안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 도모
55. 운수종사자에 대한 과도한 교육이수 부담 완화

40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완화

조례내용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0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0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별표 0]

점용료 산정기준표(제0조 관련)

(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점 용 단 위	기 간 단 위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 층 이 상 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입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1.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도로법 시행령」 별표 3이 개정(2010.9.17. 공포, 2010.9.23. 시행)되어 주유소, 주차장 등의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가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완화되었으나, 「도로점용료 징수 조

례」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주유소, 주차장 등의 진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으로 규정

II. 개선방안

- 주유소, 주차장 등의 진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별표를 개정하여 주민의 불필요한 금전부담 완화

관련 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1조제7항에서 같다)에서 징수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4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3]

점용료 산정기준(제69조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소재지		
			점용 단위	기간 단위	갑 지	을 지	병 지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 면적 1제곱 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을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진입로·출입로		
그 밖의 것		

비고

- 소재지 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를, “병지”는 그 외의 지역을 말한다.
-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치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41

도로점용료 감면사유 확대

조례내용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0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3. 주민경제 또는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4.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
 2.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도로법」 제68조가 수차례에 걸쳐 개정(2012.6.1. 공포, 2012.12.2. 시행, 2014.1.14. 공포, 2014.7.15. 시행 및 2014.5.21. 공포, 2014.7.15. 시행)되어
- 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②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및 ③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가 도로 점용료 감면 사유로 추가되었으나,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서는 이를 반영

하지 않아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여부에 있어 주민에게 혼란 초래

II. 개선방안

- 도로점용료 감면 사유에 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②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및 ③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불필요한 금전부담 사전 방지

관련 법령

○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42

도로점용허가 갱신 시 서류 제출 부담 완화

조례내용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0조(점용허가) ① 시설물을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점용허가 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제4항의 금액을 차감한 자산가액을 2년 마다 조회하여 그 금액이 2억원 미만인 사람에 한하여 갱신을 허가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점용허가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운영자 본인 및 배우자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2. 부동산 및 금융재산 조회에 대한 동의서
3. 임대차 계약서

⑥ 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대해 각 구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된 제소전 화해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자는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가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설물을 인도하고 도로점용면적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I.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서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점용의 목적, 점용의 장소와 면적 등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조회에 대한 동의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도로점용허가를 갱신하려는 자에게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 가중

II. 개선방안

- 도로점용허가 갱신 시 부동산 및 금융재산 조화에 대한 동의서 등 「도로법」 제 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서류 외의 서류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점용물의 구조
5. 공사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②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한 설계도면 및 주요지하매설물(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2.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도로점용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54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르되, 도로점용허가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43

도시공원 등 점용료 미환불 관행 개선

조례내용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제0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I.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에서는 천재지변 등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등의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환불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 부과

II. 개선방안

- 도시공원 점용료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등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드시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점용료의 징수)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 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조례내용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0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 ② 시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회계연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 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단서에서는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서는 도로점용료 분할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아 도로점용료 분할 납부와 관련하여 주민에게 혼란 및 불편 초래

II. 개선방안

-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단서와 같이 연간 도로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하되, 이 경우 남

은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소정의 이자를 붙이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 불편 해소

관련 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거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45

도로점용 공사 시 교통소통대책 수립 강화

조례내용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

제0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시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공사
4. 송유 및 열공급관 공사
5. 도로의 구조개선·확장·유지관리 및 부속물공사
6. 도로신설에 따른 기존도로 점용을 수반한 공사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나목에서는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으로,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에서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도로점용공사로서 도시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등의 경우에만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법령보다 교통소통대책 수립 대상을 좁게 규정한바, 일부의 경우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게 되어 주민 불편 발생

II. 개선방안

- 「도로법 시행령」 과 같이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점용물의 구조
5. 공사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제54조제5항 관련)

4. 공사방법

가. 점용물의 유지에 지장을 미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도로 한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것. 이 경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공사현장에는 울타리 또는 덮개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황색등을 켜는 등 도로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6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 허용

조례내용

「주차장 조례」

제0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② 인근설치 주차장은 본 건물이 멸실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기 전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I.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주차장 조례」에서는 인근설치 주차장은 본 건물이 멸실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기 전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주차장 활용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

II. 개선방안

- 인근설치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거나 일정한 경우 용도변경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장 활용도 제고
- ※ 참고로, 대법원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에서는 일정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부설주차장이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2.11.22. 선고, 2010두22962 판결)

관련 법령

○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47

민영 노외주차장 요금제한 규정 폐지

조례내용

「주차장 조례」

제0조(민영 노외주차장에 대한 관리) 주차장법 제17조에 따라 민영 노외주차장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노외주차장을 유료화할 경우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한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1호에 따른 주차요금은 별표 0의 주차요금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3.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0]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0조 관련)

구 분	1회 주차요금 (1구획당)	비 고
1 급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30분 7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200원 	
2 급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료 20분 •기본 20분~1시간 700원 •1시간 초과시 10분마다 200원 •1일 최대 7,000원 •1개월 등 장기주차권 70,000원/월 ※ 현지어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1.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주차장 조례」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민영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운영자의 가격결정권 및 경제활동 제한

II. 개선방안

- 민간인이 설치·운영하는 민영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상한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주차장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주차장법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 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조례내용

「주차장 조례」

제0조(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 사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해당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I.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주차장법」 제9조제4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이나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주차장 조례」에서는 주차요금을 체납 또는 미납한 자에 대해 주차요금등을 납부할 때까지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차량 소유자의 경제활동을 제한

II. 개선방안

- 주차요금등을 체납 또는 미납한 자의 차량에 운행제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주차장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49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규정 삭제

조례내용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제0조(가산금의 징수) ①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가산금(주차요금의 4배)을 부과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차량
2. 주차장 운영시간 종료 후 출차하는 차량으로 요금 납부안내서를 받고 정해 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정해진 주차구역내 주차하지 않은 차량이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4. 주차요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입·출차를 반복하는 차량

I.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주차장법」 제9조제3항 및 제19조의3제1항에서는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일정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주차요금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나,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에서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차량 등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차량 소유자에게 불필요한 금전 납부 의무 부과

II. 개선방안

- 부설주차장 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차량 등에 대해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50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체계 마련

조례내용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0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0과 같다.

[별표 0]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0조제2항 관련)

구분	대분류	세구분	세분류	유발계수
1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1.68
		나	일반음식점	2.56
		다	골프연습장	5.00
		라	정구장, 헬스크럽, 볼링장, 실내낚시터, 탁구장, 체육도장, 실내골프장	1.68
		마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기타 근린생활시설	1.44

1.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제2항에서는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라목에서는 정구장, 헬스클럽 등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의 경우 1.80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정구장, 헬스클럽 등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1.68로 규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통한 도시교통의 원활

한 소통 저해 요인으로 작용

II. 개선방안

- 정구장, 헬스클럽 등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하여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체계 마련

관련 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교통유발계수)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4와 같다.
 ② 시설물의 사용 용도가 건축물 관리대상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이 실제 사용되는 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한다.
 ③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시장은 한시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4]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3조의3 관련)

구분	대분류	상세구분	세분류	도시규모(단위: 명)			
				100만 이상	50만 이상 ~ 100만 미만	30만 이상 ~ 50만 미만	10만 이상 ~ 30만 미만
1	근린생활	가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1.68	1.66	1.64	1.12
		나	일반음식점	2.56	2.48	1.59	1.48
		다	골프연습장	5.00	4.80	2.40	2.12

구분	대분류	상세구분	세분류	도시규모(단위: 명)			
				100만 이상	50만 이상 ~ 100만 미만	30만 이상 ~ 50만 미만	10만 이상 ~ 30만 미만
	시설	라	정구장, 헬스클럽, 볼링장, 실내 낚시터, 탁구장, 체육도장, 실내 골프장	1.80	1.46	1.32	1.06
		마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	1.44	1.16	1.02	1.02

51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등

조례 내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

제0조 (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장 면적과 시설 및 장비등의 시설기준 : 별표 0의 기준에 의함
2. 정비요원 :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명 이상(자동차부분정비업은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을 말한 다) 이 경우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0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이어야 함

② 시장·군수는 섬(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자동차등록대수 및 정비능력과 지역 주민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과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이 동일 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고 액화석유가스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 단 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정비업자는 별표 0의 시설기준과 작업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0]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제0조제1항 관련)

구 분		자동차 총 합 정비업	자동차 소 형 정비업	자동차 부 분 정비업	자동차 원동기 정비업
가. 시설 면적	작업장·검사장·사무실·부품 창고 등의 면적	1,000㎡ 이상	400㎡ 이상	50㎡ 이상	300㎡ 이상
나. 시설 ·장비	가.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	○	-
	나. 체인부록(1톤 이상)	-	-	-	○
	다. 도장시설(스프레이건 포함)	○	○	-	-
	라. 부동액회수재생기	○	○	○	○

구 분		자동차 종합 정비업	자동차 소 형 정비업	자동차 부 분 정비업	자동차 원동기 정비업
다. 정비 ·검사 기구	가. 제동시험기	○	○	-	-
	나. 전조등시험기	○	○	-	-
	다. 사이드슬립측정기	○	○	-	-
	라. 속도계시험기	○	○	-	-
	마. 일산화탄소측정기	○	○	○	○
	바. 탄화수소측정기	○	○	○	○
	사. 매연측정기	○	○	○	○
라. 시험 ·측정기	가. 연료분사펌프시험기	○	○	-	○
	나. 압력측정기	○	○	-	○
	다. 회전반경측정기	○	○	○	-
	라. 휠밸런스	○	○	○	-
	마. 토인측정기	○	○	○	-
	바. 캠버캐스터측정기	○	○	○	-
	사. 엔진종합시험기	-	-	-	○
아. 노출시험기	-	-	-	○	
마. 공작 기계	가. 실린더보링머신	-	-	-	○
	나. 실린더호닝머신	-	-	-	○
	다. 밸브시트그라인더	-	-	-	○
	라. 밸브시트카터	-	-	-	○
	마. 크랭크연마기	-	-	-	○
바. 인력기준		정 비 책임자: 1명	정 비 책임자 : 1명	정 비 책임자 : 1명	정 비 책임자 : 1명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제2호가 개정(2013.9.6. 공포·시행)되어 자동차정비업 등록 시 정비책임자 1명 이상 등을 갖추도록 하는 인력기준이 삭제되었으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에서는 여전히 자동차정비업 등록 시 정비책임자 1명 이상을 갖추도록 규정하여 자동차정비업 등록 시 규제로 작용
- 또한,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 판금·도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비를 전문적으로 시행 중인 자동차부분정비업의 명칭을 자동차

전문정비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가 개정(2013.6.17. 공포, 2013.6.19. 시행)되었으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에서는 여전히 자동차부분정비업이라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정비업 등록 시 관련 업자에 불편 초래

II. 개선방안

- 자동차정비업 등록 시 정비책임자 1명 이상을 갖추도록 한 인력기준을 삭제하고,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 공급 규모 또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자동차종합정비업
2. 소형자동차정비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4. 원동기전문정비업

②제1항에 따라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법 제5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

[별표 21의2]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제111조의2 관련)

2.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구분		자동차 종합정비업	자동차 소형 정비업	자동차 전문 정비업	자동차 원동기 정비업
가. 시설 면적	작업장·검사장·사무실·부품 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	1,000㎡ 이상	400㎡ 이상	50㎡ 이상	300㎡ 이상
나. 시설 ·장비	가.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	○	-
	나. 체인부록(1톤 이상)	-	-	-	○
	다. 도장시설(스프레이건 포함)	○	○	-	-
	라. 부동액회수재생기	○	○	○	○
다. 정비 ·검사 기구	가. 제동시험기	○	○	-	-
	나. 전조등시험기	○	○	-	-
	다. 사이드슬립측정기	○	○	-	-
	라. 속도계시험기	○	○	-	-
	마. 일산화탄소측정기	○	○	○	○
	바. 탄화수소측정기	○	○	○	○
	사. 매연측정기	○	○	○	○
라. 시험 ·측정 기	가. 연료분사펌프시험기	○	○	-	○
	나. 압력측정기	○	○	-	○
	다. 회전반경측정기	○	○	○	-
	라. 휠밸런스	○	○	○	-
	마. 토인측정기	○	○	○	-
	바. 캠버캐스터측정기	○	○	○	-
	사. 엔진종합시험기	-	-	-	○
	아. 노즐시험기	-	-	-	○
마. 공작 기계	가. 실린더보링머신	-	-	-	○
	나. 실린더호닝머신	-	-	-	○
	다. 밸브시트그라인더	-	-	-	○
	라. 밸브시트카터	-	-	-	○
	마. 크랭크연마기	-	-	-	○
바. 삭제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이 개정(2012.5.23. 공포, 2013.5.24. 시행)되어, 종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교체 명령,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교체 명령이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으나, 해당 시, 군 등에서는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등을 통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정책취지가 미 반영

II. 개선방안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훈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 ② 배출가스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할 수 있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6.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당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⑤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착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
 2.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
3. 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제3항제1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천연가스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터리, 그 밖의 장치·부품
- ⑥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 ⑦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이 재사용·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하여 이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의 개발·연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 ⑧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자가 제4항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 ⑩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9항에 따

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⑪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제5호에 따른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⑫ 제11항에 따라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을 높이 달성하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는 자의 자동차 폐차가 우선하여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란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중 별표 17 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 및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조례내용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0조(자전거도로의 설치) 기업도시·혁신도시 등의 신도시와 재건축·재개발, 택지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타 법령에 의한 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법 제5조의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한다.

1. 단지 내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 방안
2.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대형유통시설 등과의 연계 설치 방안
3.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 방안
4. 폭 20미터 이상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정비할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 방안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자전거 도로 설치의무자 외에 재건축, 재개발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자전거도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조례에 규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부당한 부담 부과

II. 개선방안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자전거 도로 설치의무자 외에는 자전거 도로 설치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공공사업 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도로를 개설·확장·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을 하거나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제5조와 제8조에 따른 활성화계획 등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공공사업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면제) ① 법 제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도로가 경사져 있어 자전거를 이용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2. 도로교통 관계 법령에 따라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되는 경우
 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전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은 법 제9조에 따른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조례내용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0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행환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자원조달방안
5. 기타 보행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2.2.22. 공포, 2012.8.23. 시행)되어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연도별 사업추진 및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른 기본계획과 다른 보행환경 개선목표·시책방향 및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등이 포함된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시장이 수립하도록 규정

II. 개선방안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맞게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보행

자 안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 도모

관련 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보행 관련 계획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자원 조달 계획
 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5.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식 함양 및 홍보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보행환경 정비
 -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 나.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8.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이하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및 법 제17조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의 추진 성과 분석
4.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조례내용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0조(운수종사자의 교육) ① 연수기관은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교통안전체험연구·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단, 「교통안전법」 제56조의2에 따른 교육은 제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의 운수종사자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I.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서는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제행사 등에 대비하여 운송질서의 확립, 안전운행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수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상위 법령에서 정한 교육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교육을 받도록 하여 운수종사자의 영업활동 등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II. 개선방안

-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른 교육만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운수종사자의 부담 완화

관련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②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제행사 등에 대비하여 운송질서의 확립, 안전운행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25조에 따라 운수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 8 편

유통(시장·대규모점포 등) 관련 조례

56.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등 정비
57.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요건 완화
58.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시 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 완화
59. 임시시장 개설요건 완화
60.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사유 마련
61. 유통분쟁 조정을 위한 위원회 신설
62.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확대 1
63.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확대 2
64. 유통분쟁 조정 신청 요건 완화

56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등 정비

조례내용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0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시내의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이 개정(2013.1.23. 공포, 2013.4.24. 시행)되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II. 개선방안

-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는 입법취지를 실현토록 함

관련 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조례내용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0조(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 ①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제11조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3.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 개시 또는 확장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같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산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법령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제한 사유 외에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요건을 강화하여 규제로 작용

II. 개선방안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제한하거

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사유 외의 사유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유통기업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시 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 완화

조례내용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0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①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 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

1.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사업계획서,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른 서류 외에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하려는 자에게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 부과

II. 개선방안

-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하려는 자에게 상생협력사업계획서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서류 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건축물면적·매장면적·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마. 업종의 구성
- 바. 운영·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사. 재무구조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영향평가서

- 가. 요약문
- 나. 사업의 개요 : 개설자, 개설지역, 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매장면적(㎡)
- 다.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 공간적 범위, 위치도 또는 지형도
- 라. 인구통계 현황 분석 : 거주인구수와 세대수, 거주인구 연령분포와 소득분포, 유동인구 현황 및 종합적 분석
- 마.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소매점 현황 및 종합적 분석
- 바. 상권의 특성 분석 : 상권 내 주거형태, 교통시설, 집객시설, 그 밖의 사업자 현황 및 종합적 분석

사. 상권영향기술서

3. 지역협력계획서(지역 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한다)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59

임시시장 개설요건 완화

조례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0조(임시시장의 개설)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市場)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0조(임시시장의 등록)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시장은 제외한다)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일정규모 이상의 임시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가 개정(2012.12.11. 공포, 2013.6.12. 시행)되었으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는 여전히 일정규모 이상의 임시시장 개설 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시시장 개설자에게 부당한 부담 부과

II. 개선방안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임시시장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단체가 정하여진 날에 농수 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5.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지나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와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임시시장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임시시장의 면적)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를 말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임시시장의 개설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2. 임시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임시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국·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군·구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60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사유 마련

조례내용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사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서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정책집행 곤란 및 주민 불편 초래

II. 개선방안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정책집행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관련 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려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전통시장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61

유통분쟁 조정을 위한 위원회 신설

조례내용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음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바,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상인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협의체가 없어 사회적 갈등 해소 지연 우려

II. 개선방안

-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또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정

관련 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의4(분쟁의 범위)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생활환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 혼잡
2.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소음, 진동 및 악취
3.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
4.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62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확대 1

조례내용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에 관한 사항 중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시·군위원회”라 한다)의 조정안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분쟁을 조정한다.

1.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 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다만, 「환경분쟁 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대규모점포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 혼잡, 소음, 진동 및 악취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제3호와는 달리,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중 「환경분쟁 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환경피해에 대한 다툼 등)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주민이 다양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

II. 개선방안

-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활환경에 관한 모든 분쟁은 지

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의4(분쟁의 범위)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생활환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 혼잡
2.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소음, 진동 및 악취
3.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
4.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63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확대 2

조례 내용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0조(조정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의 내용이 해당 지역의 상거래질서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가·허가·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4.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유통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상 분쟁조정 거부 사유 외에 “분쟁의 내용이 해당 지역의 상거래질서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추가하여 주민이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

II. 개선방안

- 「유통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거부 사유 외의 사유는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0조(조정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의4(분쟁의 범위)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생활환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 혼잡
2.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소음, 진동 및 악취
3.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
4.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64

유통분쟁 조정 신청 요건 완화

조례내용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0조(분쟁의 신청) ①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명 이상의 연서로, 법 제 8조의 대규모 점포 개설자(법 제12조제2항의 대규모 점포관리자를 포함한다)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I.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유통산업발전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는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위원회에 신청인 및 상대방의 성명·주소·연락처, 분쟁의 발단 및 경위,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및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에서는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명 이상의 연서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유통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주민에게 불편 초래

II. 개선방안

-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명 이상의 연서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7조(분쟁의 조정) ① 제36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의2(분쟁의 조정신청) 법 제37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9편

산업단지 관련 조례

- 65. 산업단지개발사업 분양수익 산정을 위한 이윤율 규정
- 66. 산업단지개발사업 비용부담 주체 적정화
- 67.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 주체 확대

65

산업단지개발사업 분양수익 산정을 위한 이윤율
규정

조례내용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 산정을 위한 적정이윤율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음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은 사업계획에 따른 추정이익에서 적정이윤율 차감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적정이윤율은 건축원가의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이윤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는 분양수익 산정에 애로 발생

II. 개선방안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윤율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시설 등을 분양·임대·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시설 등 중에서 제1항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리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시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고 처분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관리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각 구역별 건축물의 범위가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일치되도록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①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이하 이 조에서 “분양수익”이라 한다)은 사업계획에 따른 추정이익에서 적정이윤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이윤은 건축원가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분양수익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 안에서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건설
2.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한다)의 분양가격의 인하

④ 분양수익과 적정이윤은 준공인가 신청시 정산하여야 한다.

조례내용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조례」

제0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한다.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支障物)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조례」에서는 토지의 매입비, 조성사업의 공사비 등을 입주자(입주기업)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입주기업에 금전부담 전가

II. 개선방안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비용의 부담)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과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례내용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조례」

제0조(사업의 시행자) 산업단지조성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행정청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 시행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조성지의 분양은 군수가 직접 행한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국가,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조례」에서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은 원칙적으로 군수가 시행한다고 규정하여, 산업단지개발에 전문성 있는 기관의 참여를 제한

II. 개선방안

-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2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3.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와 제20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산신탁업자
6. 산업단지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사업시행자)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속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공급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시설용지를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 나.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산업시설용지로 직접 사용하고, 남은 용지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의 용도로 공급하려는 경우
 - 1) 산업시설용지
 - 2) 법 제2조제9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용지
 2.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등록을 한 자로서 공시된 당해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를 제외한다)이상인 자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안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용지를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자
- ③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이 조 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제10편

환경(폐기물·가축분뇨 등) 관련 조례

- 68.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완화
- 69.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 등 실시
- 70.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위탁계약 시 규제 완화
- 71.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해제 절차 및 방법 명확화
- 72. 법령상 근거 없는 신고의무 폐지
- 73. 민감정보 공개 제한

조례내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외에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 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I.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의 무자가 아닌,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조례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하고,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하도록 규정하여 부당한 의무 부과

II. 개선방안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의 무자가 아닌 자를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운동장(지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육관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군사·국방시설은 제외한다)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교로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학교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골프장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증축으로 누적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나. 개축·재축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제1항제2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증축으로 누적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나. 개축·재축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제1항제3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증축으로 누적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나. 개축·재축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제1항제4호의 골프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증축으로 누적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나. 개축·재축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제1항제5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증축으로 누적된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나. 개축·재축한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69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 등 실시

조례내용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주민만족도 등의 평가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등을 규정하지 않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생활폐기물 관련 대민 서비스의 품질 저하 우려

II. 개선방안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

- 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70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위탁계약 시 규제 완화

조례내용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0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 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0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7조제1호에 의해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산정과 관련한 사항 등)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7조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I.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그 위탁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조례로 부과하여 사업자의 경제활동(계약의 자유) 제한

II. 개선방안

- 법령의 위임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과 폐기물처리업자 간의 위탁계약의 계약조건을 정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의료폐기물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운영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 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조례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나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주민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절차나 방법을 전혀 알 수 없는 불편이 발생하고 관련 업무의 투명성 및 객관성 저하 우려

II. 개선방안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나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조례내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0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사용자 등의 신고의무) ①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사용자, 손괴자, 원인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신고기간 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송·배급수관과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재건축 할 때
4. 급수 가구 수가 변경되었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I.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사용자·손괴자 등에게 급수설비의 사용개시 또는 중지 시 등의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자 등에게 불편 초래

II. 개선방안

-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자 등의 신고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73

민감정보 공개 제한

조례내용

「환경 기본 조례」

제0조(환경오염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시는 환경오염 상황을 상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을 상시 측정하기 위한 체계를 유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민간·환경단체, 시민을 참여 시킬 수 있다.

I.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환경 기본 조례」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이를 공개할 경우 해당 기업이나 관련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민감한 정보까지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해당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 초래

II. 개선방안

- 법률의 위임 없이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환경 기본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편

문화예술 관련 조례

- 74. 미술장식 설치 의무 완화
- 75.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예술활동 보장
- 76.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 불편 해소
- 77. 문화재 수리 및 매장문화재 보호에 관한 내용 분리 규정
- 78. 문화재 기초조사 사전 동의 예외 사유 삭제

조례내용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0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시장이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 및 동별 100세대 미만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 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사목 및 아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의료시설중 병원
6. 업무시설
7. 숙박시설
8. 위락시설
9. 공공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 시설

제0조(미술장식등의 설치)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등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미술장식등 설치계획 심의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건축주에게 통지하고 건축주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건설 임대주택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 「문화예술진흥 조례」에서는 이들 건축물에도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해당 건축주에게 부당한 부담 부과

II. 개선방안

-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맞추어 수정하는 내용으로 「문화예술진흥 조례」 개정
- 한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가 개정(2011.11.25. 공포, 2011.11.26. 시행)되어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데, 시·도 조례의 위임이 없는 한 시·군·구 조례에서는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 불가능

관련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空調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의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② 법 제9조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 ③ 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건축 비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④ 법 제9조에서 “미술작품”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 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13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항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④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75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예술활동 보장

조례내용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0조(심의위원의 의무) ① 심의위원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미술작품의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심의위원은 재직기간 중에 도내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출품을 제한한다.

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감정·평가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3. 심의위원이 해당 미술작품의 제작 등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
- ④ 제3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해당 미술작품의 감정·평가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회피하여야 한다.

I.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문화예술진흥 조례」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재직기간 중에 도내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출품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여 심의위원의 예술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II. 개선방안

- 법령의 위임 없이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재직기간 중에 도내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출품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문화예술진흥 조례」 개정

-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의 미술작품 출품 제한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도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공정성, 투명성 담보 가능
- 한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가 개정(2011.11.25. 공포, 2011.11.26. 시행)되어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바, 시·도 조례의 위임이 없는 한 시·군·구 조례에서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관련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空調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의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② 법 제9조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 ③ 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건축 비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

로 한다.

④ 법 제9조에서 “미술작품”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3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항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작품의 가격
2. 미술작품의 예술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5.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③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면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조례내용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0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0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신청) ① 제11조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제2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0조(지정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면,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정해진 신청서에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서를 받은 행정청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예술진흥 조례」에서는 상위법령과는 다른 서식의 신청서를 규정하고 있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인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불편 초래

II. 개선방안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맞게 「문화예술진흥조례」 상의 신청서를 수정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예술진흥조례」 개정

관련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예술활동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시·공연 질서 문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예술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방법·절차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이하 제5호 및 제6호에서 같다)의 조직·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의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한다.

1.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2. 재정 운영의 건전성
3.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실적
4. 공연·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지사가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77

문화재 수리 및 매장문화재 보호에 관한 내용 분리 규정

조례내용

「문화재 보호 조례」

구 「문화재 보호법」(법률 제10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여, 문화재수리 및 매장문화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 보호 조례」에 규정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문화재 보호법」에서 문화재수리 및 매장문화재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이 분법되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0.2.4. 공포, 2011.2.5. 시행)되었는데,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는 구 「문화재 보호법」(법률 제10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데, 문화재수리 공사업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수범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분법 취지 미 반영

II. 개선방안

- 「문화재 보호법」이 분법된 취지나 내용에 맞게 「문화재 보호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문화재수리 공사업자 등의 불편 해소

관련 법령

-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0000호, 2010.2.4. 공포, 2011.2.5. 시행)

개정이유

우리나라 모든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총괄하는 이 법은 1982년 전부 개정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필요한 조항을 보완하여 개정하였기 때문에 입법체계가 복잡하고, 관련 법 제도간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상호간 모순·저촉이 발생하고 국민들의 문화재보호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존·관리 환경 변화에 따른 입법수요에 부응하고 체계적인 문화재수리 제도 마련과 매장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 법의 내용 중 문화재수리와 매장문화재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보완하는 한편, 우리 민족의 정체성 회복과 인류문화의 보호를 위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보호·환수 및 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다양한 유형의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999호, 2010.2.4. 공포, 2011.2.5. 시행)

제정이유

문화재수리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에 통합되어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관련규정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을 원용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문화재수리공사에 관한 사항을 배제하고 있어 문화재수리공사 수행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거나 이해관계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규정하여 문화재수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재수리에 있어 의무감리 제도를 도입하고 과도한 하도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문화재수리 분야의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01호, 2010.2.4. 공포, 2011.2.5. 시행)

제정이유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수중문화재의 정의, 매장문화재조사기관의 등록 등의 규정을 추가·보완하여 따로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매장문화재의 조사·발굴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매장문화재의 보호·조사 및 관리와 관련된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78

문화재 기초조사 사전 동의 예외 사유 삭제

조례내용

「문화재 보호 조례」

제0조(문화재 기초조사) ① 시장은 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재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조사·발굴과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재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문화재보호법」 제10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는 시장은 문화재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나,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조사 취지를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민에게 불편 초래

II. 개선방안

- 「문화재보호법」 제10조제3항과 같이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의 경우 반드시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재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조사·발굴과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편

기타 조례

79. 옥외광고업 등록기준 완화
80. 산지유통인의 경제활동 보장
81. 농업기반시설 등에 대한 목적 외 사용기간의 용도별 구분
82. 동물보호센터 지정 요건 개선
83.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인 등에 대한 피해 보상 강화
84. 시민인권보호관 임용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정비
85. 「민법」 개정에 따른 결격사유 요건 정비
86. 공공기관 정보 활용도 제고
87. 주민 제안서 폐기 시 통보
88.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시민단체의 참여 보장
89.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윤리 강화
90. 분쟁당사자 대표 선정의 자율성 보장
91. 명예도민에게 의무 부과 규정 삭제
92. 자의적인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선임 방지
93. 공립어린이집 재수탁 기회 부여
94. 민간 지역아동센터의 정보제출 부담 완화
95. 법령상 근거 없는 보험가입 의무 완화
96. 금융기관의 융자금 이자비용 부담 완화
97. 정신보건자문의 자격요건 확대
98.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 도모
99. 제대혈 기증 산모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100. 등록한옥 소유권 이전에 대한 규제 개선

조례내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0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0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별표 0]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 (제0조제1항 관련)

지 역	시설기준	
	옥외광고제작업	옥외광고대행업
군 관 내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 및 사무실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옥외광고물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작업장 면적 기준(9.9제곱미터)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2011.10.10. 공포·시행)되었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는 여전히 옥외광고물 등록 시 9.9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 및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옥외광고업 등록 시 부당한 규제로 작용

II. 개선방안

- 옥외광고업 등록 시 작업장 및 사무실 면적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① 옥외광고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제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4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이란 별표 6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말한다.

[별표 6]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제44조 관련)

기술능력	시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2.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사무실 또는 작업장(면적 제한 없음)

비고: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해야 한다.

조례내용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제0조(산지유통인 등록 등) ③ 시장은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한 경우
2. 등록 후 2년간 연속하여 출하실적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관련법령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I.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및 제82조제5항제4호에서는 산지유통인이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였을 때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에서는 산지유통인으로 등록 후 2년간 연속하여 출하실적이 없는 등의 경우에도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산지유통인의 경제활동 제한

II. 개선방안

- 산지유통인으로 등록 후 2년간 연속하여 출하실적이 없는 경우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5항제4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산지유통인 등록취소 사유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산지유통인의 등록) ④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2조(허가 취소 등)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른 중도매인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지유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판매·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하였을 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81

농업기반시설 등에 대한 목적 외 사용기간의
용도별 구분

조례내용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제0조(사용기간) ①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사용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은 사용 목적에 따라 각각 3년, 5년 및 10년 이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에서는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기간을 일률적으로 3년 이내로 규정하여 주민의 경제활동 제한

II. 개선방안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맞게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기간을 그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내용으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공용·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

- 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2.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

조례내용

「동물보호 조례」

제10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동물보호법」 제15조제3항에서는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4에서는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동물보호조례」에서는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을 동물병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여 동물보호센터 지정 시 부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

II. 개선방안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동물보호법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을 말한다.

조례내용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제0조(보상제외) ① 피해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총 피해보상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른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 재배 및 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의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5.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보조 및 지원을 받는 경우
6.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7.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8.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액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금액을 피해보상의 기준으로 하면서 그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야생생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12-131호) 제11조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들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에서는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 총 피해보상금액이 20만원 미만인 등의 경우를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조례에서 피해보상 지원대상자를 법령보다 축소

II. 개선방안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 및 「야생생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12-131호) 제11조에 맞게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를 개정하여 농업인 등에 대한 피해 보상 강화

관련 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 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1. ~ 7.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피해보상기준: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액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야생생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11조(피해보상 대상자)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조례 내용

「인권기본조례」

제0조(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고 한다)을 둔다.

② 보호관은 5인 이내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개모집에 의해 시장이 임명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할 사람 중 인권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대학에서 재직할 경력 있는 사람
3.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0조(임기 및 직무의 독립성) ① 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호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보호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보호관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 외에는 보호관 이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공무원의 임용·면직 및 겸직 금지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의 신분 및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고, 그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인권기본조례」에서는 시민인권보호관의 임용, 면직 및 겸직금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나아가 상위법령과 달리 규정하고 있어 시민인권보호관이 되려는 사람 등에게 혼란 초래

II. 개선방안

- 시민인권보호관의 임용·면직 및 겸직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인권기본조례」 개정

관련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례내용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민법」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이 개정(2011.3.7. 공포, 2013.7.1. 시행)되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으나,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홍보대사의 결격사유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규정

II. 개선방안

- 개정된 「민법」에 맞게 홍보대사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홍보대사 운영 조례」 개정
- 한정치산자를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라도 피한정후견인에게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개정 「민법」의 취지에 따라,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 포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필요(법령 입안·심사 기준, 법제처, 181쪽 참고)

관련 법령

○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부칙<법률 제10429호, 2011.3.7.>

제2조(금지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지산 또는 한정치산의 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금지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지산 또는 한정치산의 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조례 내용

「정보공개 조례」

제0조(청구인의 책무) 정보공개 청구인은 이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를 청구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목적을 제한하거나 그 용도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데, 「정보공개 조례」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인은 얻은 정보를 청구 목적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정보의 용도 제한

II. 개선방안

- 행정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의 목적이나 용도를 제한하지 않도록 「정보공개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7

주민 제안서 폐기 시 통보

조례 내용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주민이 행정청에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서 행정청이 보완을 요구한 후 주민이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면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별도의 통보 절차 없이 행정청 임의로 주민 제안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불편 발생

II. 개선방안

- 주민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처리결과를 주민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이 자신이 제안한 내용에 대한 처리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개선

관련 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민원서류의 보완·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사무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서류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이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내용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군 의회의원 1명과 군소속직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에서는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는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여, 시민단체의 참여 배제

II. 개선방안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을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

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6.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규칙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규칙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규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대통령령
6.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조례내용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0조(기능)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군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관할 공직유관단체 (지방공사·공단, 업무 수탁자 등)의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심사 및 취업심사 등을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대상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있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 취업심사 등 관련 업무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저하 우려

II. 개선방안

-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대상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포함하여, 이들에 대한 재산등록 등의 업무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

관련 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

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6.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규칙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규칙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규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대통령령
6.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조례내용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제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분쟁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미리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가 필요에 따라 대리인을 지정하여 소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대리인지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분쟁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2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인 대표자선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행정절차법」 제11조제2항에서 다수 당사자의 대표는 당사자들이 선정토록 한 것과는 달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에서는 분쟁당사자의 대표를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선정하도록 하여 주민이 그 대표자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지 못하는 불편 발생

II. 개선방안

- 분쟁당사자가 대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대표자 선정의 자율성 보장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1조(대표자) ① 다수의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아 행정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 상당한 기간 내에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등이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청이 직접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 ③ 당사자등은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 ④ 대표자는 각자 그를 대표자로 선정한 당사자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절차를 끝맺는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⑥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다. 다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91

명예도민에게 의무 부과 규정 삭제

조례내용

「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제0조(권리·의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권리행사 및 의무 부담을 허가 할 수 있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명예도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되고, 「주민투표법」 제5조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없는 명예도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투표법」 제5조 위배

II. 개선방안

- 법령의 근거 없이 명예도민에게 권리,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4조(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 ①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②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조례내용

「영유아 보육 조례」

제0조(구성)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둔다.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4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고 그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12.6.4. 공포, 2013.12.5. 시행)되었으나,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는 여전히 보육정보센터로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무원이 보육정보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자의적으로 운영

II. 개선방안

-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센터의 장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영유아 보육 조례」를 개정하여 센터운영의 전문성 및 적법성 제고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③ 삭제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①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례내용

「영유아 보육 조례」

제0조(운영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보조금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조(운영위탁의 제한)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 취소된 날부터 5년간 공립 어린이집 및 거점어린이집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이때 수탁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없다.

I.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위탁이 취소되면 5년간 공립어린이집 수탁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명의로 수탁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경제활동의 기회 제한

II. 개선방안

- 법률의 위임 없이 어린이집 수탁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영유아 보육 조례」를 개정하여 경제활동의 기회 부여
- 한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호라목2)에 따라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없는바, 이와 같은 취지라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호라목2)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하여 규정할 필요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

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신청자격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위탁운영을 신청하려는 운영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1)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 3)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마.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시간연장형 보육)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심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아.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2. 심사기준

심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다. 운영체의 운영실적	10
라. 운영체의 공신력	10
마.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계	100

3. 심사결정

- 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 나.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제2호의 심사항목 중 가목(어린이집 운영계획), 나목(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다목(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4. 그 밖에 공고, 위탁계약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조례내용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0조(지역아동센터의 책무) 관내 각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 정보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지역아동정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간 정보를 공유해야 함은 물론 교류 활성화에 협조해야 한다.

I.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아동복지법」 등의 위임 없이 민간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로 하여금 시장이 설치한 지역아동정보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민간 지역아동센터에 불필요한 부담 부과

II. 개선방안

- 법률의 위임 없이 민간 지역아동센터에 정보제출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이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

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조례내용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

제10조(보험가입) 시장 또는 수탁자는 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I.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노인일자리 사업의 수탁자로 하여금 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 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수탁자의 경제활동에 제약으로 작용

II. 개선방안

- 법률의 위임 없이 보험가입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수탁자의 부담 완화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96

금융기관의 용자금 이자비용 부담 완화

조례내용

「농어업인 용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

제0조(이자 부담비율 결정) 용자금에 대한 이자는 군과 금융기관이 부담한다. 단 부담비율은 군과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I.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농어업인 용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를 받을 때 그 이자의 일부를 금융기관이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금융기관에 부당한 금전 부담 부과

II. 개선방안

- 법률의 위임 없이 금융기관에게 용자금 이자를 부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농어업인 용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97

정신보건자문의 자격요건 확대

조례내용

「정신보건자문의의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제0조(자격)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정신과전문의로서 1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자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정신보건자문의의 자격요건(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 관련 단체 또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서 1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과는 달리, 「정신보건자문의의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에서는 그 자격요건을 좁게 제한(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정신과전문의로서 1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자)하여 진입규제로 작용

II. 개선방안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정신보건자문의의 자격요건에 맞게 「정신보건자문의의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정신보건자문의의 위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관련 단체 또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서 1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 1명 이상을 정신보건자문의(이하 “자문의”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관할구역안에서 자문을을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관련 단체 또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자문의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익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자문
2.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에서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지를 위한 훈련에 관한 지도·자문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문의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례내용

「소비자보호 조례」

구 「소비자보호법」(법률 제7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여 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개정(2006.9.27. 공포, 2007.3.28. 시행)되어 소비자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이 전환되었는데, 「소비자보호 조례」에서는 구 「소비자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여전히 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된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함

II. 개선방안

- 「소비자기본법」의 개정 목적 및 취지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소비자보호 조례」를 개정하여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 도모

관련 법령

- 소비자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7988호, 2006.9.27. 공포, 2007.3.28. 시행)

개정이유

종래 소비자보호 위주의 소비자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소비자정책의 수립, 소비자안전·교육의 강화 등으로 소비자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한국 소비자들의 관할 및 소비자정책에 대한 집행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며, 소비자피해

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일괄적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을 도입하여 소비자피해 구제제도를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소비자보호법」·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 및 입법목적의 변경(법 제1조 및 제6장)
법 제명을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을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법의 목적을 소비자의 보호에서 시장경제 주체로서의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으로 변경함.

99

제대혈 기증 산모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조례내용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0조(제대혈 기증에 관한 동의) ① 제대혈은행의 장은 기증제대혈의 관리를 위하여 산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에 동의하는 산모로부터 기증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1. 제대혈기증의 목적에 관한 사항
 2. 제대혈 채취방법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3. 제대혈 보존기간, 보존방법 및 보관비용 등에 관한 사항
 4. 제대혈 기증자 및 그 가족의 권리와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③ 그 밖에 제대혈 기증동의서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 제대혈은행의 장은 산모에게 제대혈기증의 철회 시기와 방법, 제대혈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대혈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산모에게 제대혈 기증에 관하여 부실한 정보 제공 우려

II. 개선방안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모두 산모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제대혈을 기증하려는 산모의 알권리 보장

관련 법령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7조(제대혈 기증 및 위탁에 관한 동의) ① 제대혈은행의 장은 기증제대혈 및 가족제대혈의 관리를 위하여 산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에 동의하는 산모로부터 기증 동의서 또는 위탁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1. 제대혈기증 및 제대혈위탁의 목적에 관한 사항
 2. 제대혈 채취방법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3. 제대혈 보존기간, 보존방법 및 보관비용 등에 관한 사항
 4. 제대혈기증자, 제대혈을 위탁하는 자(이하 “제대혈위탁자”라 한다) 및 그 가족의 권리와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제대혈기증, 제대혈위탁의 철회 시기와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대혈기증 및 제대혈위탁의 동의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그 밖에 제대혈 기증동의서 및 위탁동의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대혈 기증 및 위탁에 관한 동의) 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용 산모혈액의 채취 및 보관에 관한 사항
2. 인간제대혈(이하 “제대혈”이라 한다)과 산모혈액에 대한 검사항목 및 그 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
3. 이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대혈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대혈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대혈 처리에 관한 사항
5. 제대혈은행이 폐업·휴업하거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대혈 처리에 관한 사항

조례내용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0조(등록의 유효기간) ① 제4조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에 따른 한옥 수선등의 비용을 보조지원 한 경우 : 최종 지원금을 지급한 날부터 5년
2. 제8조에 따른 한옥 수선등의 비용을 융자지원 한 경우 : 융자지원액의 상환 완료일까지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의 유효기간 중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I.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는 한옥 등록의 유효기간 중에 한옥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등록한옥의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의무 부과

II. 개선방안

- 등록한옥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등록한옥의 새로운 소유권자의 불필요한 부담 해소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부 록

1.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소개
2.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소개
3.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서
4.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부록1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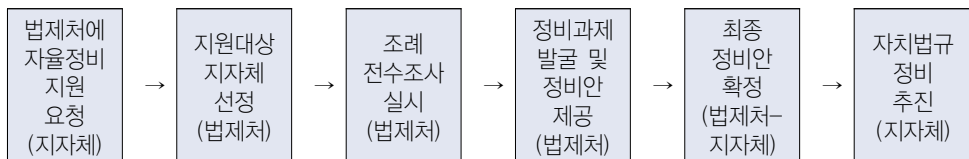
1.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개념

-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치법규를 정비하려고 할 때, 정비사항 발굴 및 정비안 마련 등 관련 지원을 법제처에 요청하면, 이를 지원(2014.3월부터 시행)
 -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전수를 검토하여,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정비과제에 대한 정비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공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제처에서 제공한 정비안을 바탕으로 자체 정비 추진

* 조례 정비과제 발굴 유형 분류

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② 상위법령 위반 소지(위임범위 일탈, 상위법령과 불일치 등 포함), ③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사항) 신설 ④ 자치법규 입안원칙 위반 ⑤ 기타(인용조문 오류 등) 등으로 분류하여 정비과제 발굴

2.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체계



부록2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소개

1.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개념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입안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위법 위반 여부, 입법기술, 자치법규 자체의 해석상 의문에 대해 법제처에 의견을 요청하면 법제처에서 검토의견(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2.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 교육감 및 지방의회 의장이 의견제시를 요청
 -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산하기관(예: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은 직접 요청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관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통해 요청
 - *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의견제시 요청 불가

3.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방법

-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서를 작성하여 온나라 공문으로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로 제출(044-200-6761)
-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서 양식은 아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음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법령·해석정보/자치법규 의견제시 안내/의견제시 요청서
 -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자치입법지원/의견제시 요청/의견제시 요청서

부록3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서

☞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건에 관한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요건 체크 사항	체크	세부내용	
1. 자치법규 의견제시 <u>요청권한</u>이 있는가? * 자치법규 의견제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지방의회(지방의회 의장 명의)만 요청할 수 있고 , 보건소, 상수도사업본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u>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 지역교육청 및 지방의회 의원 개인 명의로는</u>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	√
		교육감	
		지방의회 의장	
2. 자치법규(조례, 규칙)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인가 ?	●	조례	
		규칙	√
3. 의견제시 요청 대상 자치법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가? *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반대 경우 포함)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4. 의견제시 요청대상 자치법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의 조례안이거나 공포되기 전의 규칙안인가? *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재의요구된 경우를 포함)나 공포된 규칙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입안중	
		입법예고중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심의중	√
		지방의회 제출	
		지방의회 의결	
		조례·규칙 공포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요건 체크 사항	체크	세부내용
<p>5.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이 특정되어 있는가?</p> <p>* 의견제시 요청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조례안 전체에 대한 상위법 위반 여부 등과 같이 질의하거나 질의사항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p>	●	
<p>6. 자치법규 해석요청인 경우에는 현행 자치법규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나 구체적인 사실 인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해당 자치법규의 일반적 해석에 관한 요청인가?</p> <p>* 의견제시 요청시 <u>현행 자치법규의 상위법 위반 여부</u>에 관한 사항이거나 <u>구체적 사실인정</u>에 관한 사항인 경우 또는 <u>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u>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p>	●	

1. 질의요지

- ☞ 질의요지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며, 질의요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 나 등으로 나누어 작성합니다.

2.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조문 및 관련 법령

- ☞ 의견제시 대상이 되는 자치법규의 세부내용과 관계법령을 적습니다.

3. 대립되는 의견

가. 갑설

나. 을설

4. 요청기관 및 관계기관의 의견

- ☞ 의견제시 요청대상에 대해 요청기관의 의견을 적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적습니다.

5. 참고자료

- ☞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률자문결과 등 관련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첨부’로 적고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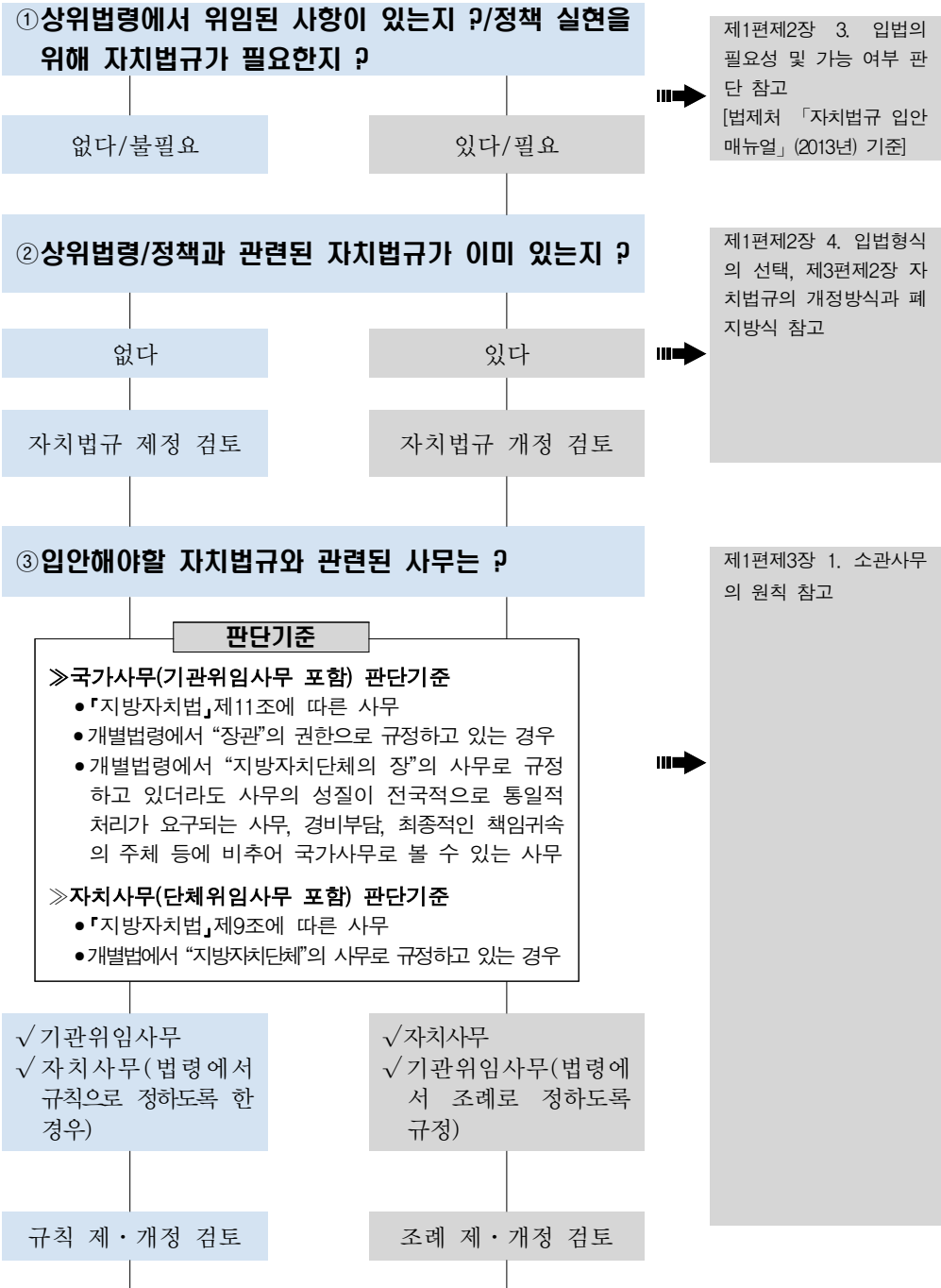
부록4]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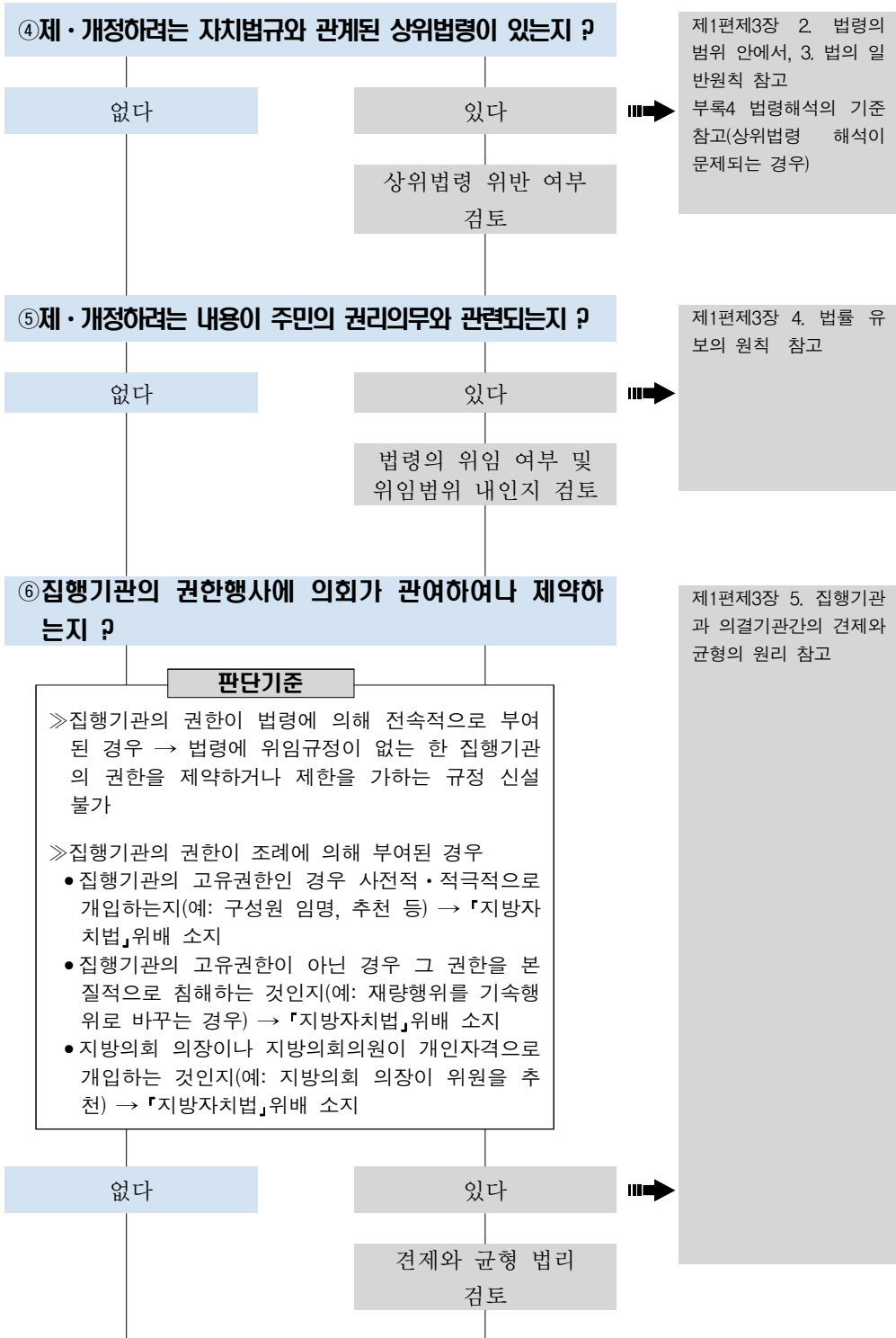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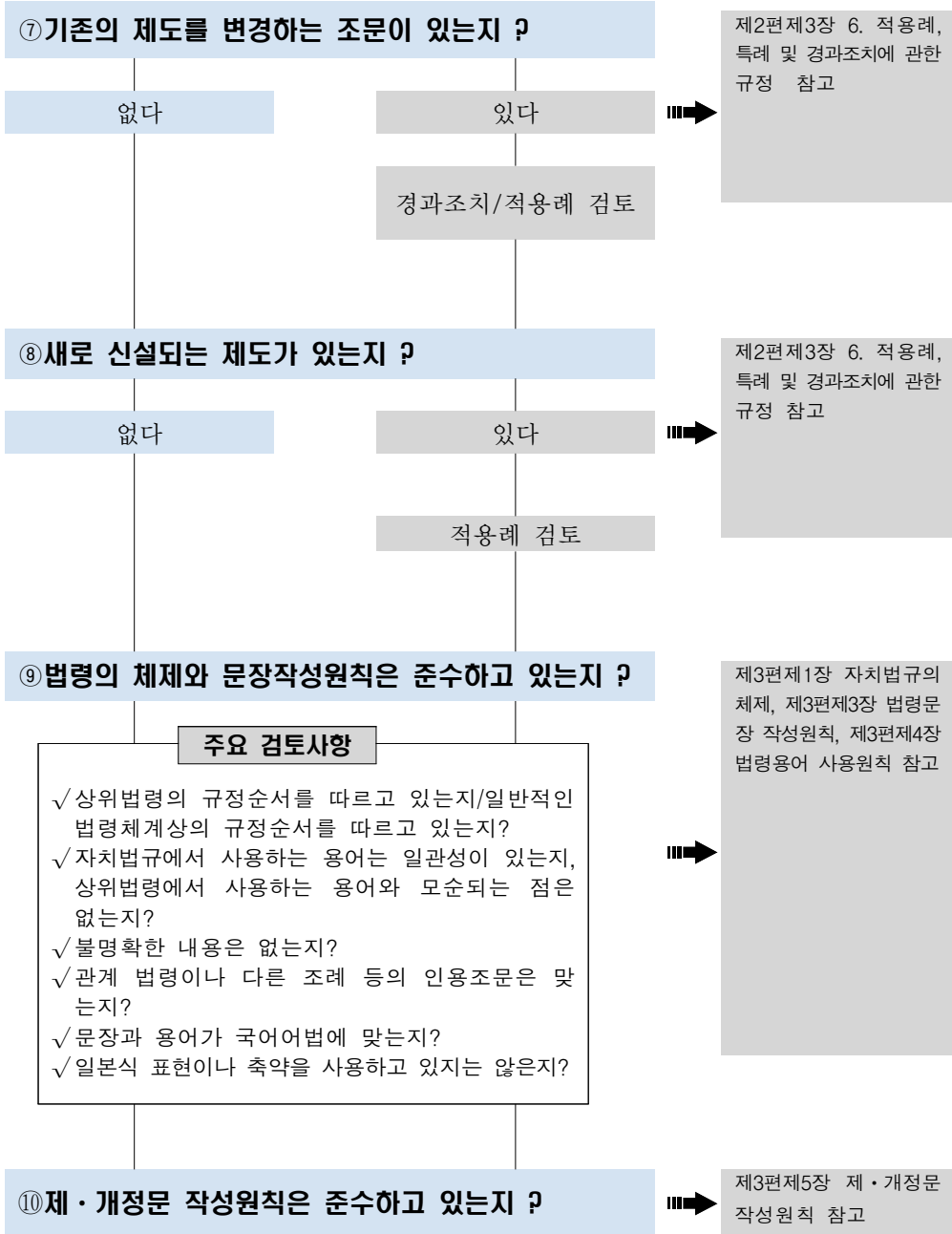
자치법규 입안체크리스트는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필수사항과 필수사항을 검토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의 해당 부분을 표시해 둔 것으로,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고려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표시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참조할 수 있는 부분도 직접 관련 부분만 표시해 두었기 때문에 입안분야별 세부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세부기준입안기준 등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

발행처: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7-1동)

전화: 044)200-6900

F A X: 044)200-6972

발행일: 2014년 12월

디자인·인쇄: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인쇄사업장
02)6401-8891